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문성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0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문성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김규남, 김영철, 김원태,
김재진, 김종길, 김태수,
김혜영, 남창진, 박강산,
박영한, 서상열, 오금란,
옥재은, 유만희, 유정희,
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성배, 이은림,
이종태, 이종환, 이희원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청소년 대상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실효성 높은 교육이 필요함이 대두되는 실정임
- 특히, IT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적 희롱 및 폭력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될 수 있기에 단순 주입식이 아닌 강의, 토론, 실습 및 역할연기 등을 통해 직접 깨우치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피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각도적인 교육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명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이루어질 수 있도록”을 “이루어지고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, 토론, 실습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제10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이루 어지고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, 토론, 실습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-----.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10조 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(강의, 토론, 실습 및 역할연기 등)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